

보도시점 2026. 5. 26.(화)
회의 시작(10:00) 이후

배포 2026. 5. 22.(금)

“아동·청소년 전환기, 빈틈없이 보호한다”

취약 아동·청소년 지원 연계 관계부처 회의 개최

- 13세 전후 지원 공백 해소·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 강화 등 논의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·성평등가족부(장관 원민경)·교육부(장관 최교진)는 5월 26일(화)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.

이번 회의는 그간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온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,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.

이날 회의에서는 ▲13세 전후 아동·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, ▲학생 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-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, ▲위기임신보호 출산제 홍보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.

3개 부처는 0~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*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하였다. 또한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하였다.

* 12세 이하 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)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구팀(담당 공무원, 사례관리사)이 신체, 정서, 학습,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
그리고 올해 3월부터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*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건복지부,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학교·교육청 단위의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,

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.

*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-교육청-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학습·복지·건강·진로·상담 등 통합지원

그밖에 청소년 대상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강화를 위해 중·고등학교,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지역 상담 기관*(1308)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.

* 산모·아동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·지원체계 운영 중

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“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다”라며, “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모든 아동·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지원체계 관계부처 회의 개요
2. 드림스타트 개요
3.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개요
4. 학생통합맞춤지원 개요
5.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	책임자	과 장	장영진 (044-202-3430)
		담당자	사무관	강예나 (044-202-3433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연 (044-202-3410)
		담당자	사무관	정소희 (044-202-3424)
담당 부서	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정연 (02-2100-6271)
		담당자	서기관	강동근 (02-2100-6276)
담당 부서	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	책임자	과 장	나현주 (044-203-6521)
		담당자	사무관	박경령 (044-203-6525)

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지원체계 관계부처 회의☐ 개 요

- (일시) 2026. 5. 26.(화) 10:00
- (장소) 보건복지부

☐ 참석자

- (복지부)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, 아동정책과장, 아동보호자립과장 등
- (성평등부) 청소년자립지원과장 등
- (교육부) 학생지원총괄과장 등

☐ 안 건

- 13세 아동 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방안
-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-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
-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홍보 협조 요청

- **[목적]** 취약계층 아동 가구 대상,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
- * 아동에 대한 책임 사례관리(0~12세 연령별 발달·성장 초점), 위기가구 전체 종합지원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역할분담

- **[내용]** 시·군·구 아동 전담 사례관리팀 운영(일명 ‘드림스타트’)

- (시군구별 5~8명) 전담공무원 2~3명 + 공무원 사례관리사 3~5명*

* 229개 시군구 사례관리사 총 925명 배치 중

- (사례관리) 가정방문 등 상담 후 아동발달 사정에 따라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지원, 모니터링, 지속 사례관리 실시(평균 3년6개월)

구분	필수·맞춤서비스 예시
신체/건강	건강검진·예방접종, 치과·안과 진료, 영양교육 및 성장발달, 체육활동 지원 등
인지/언어	기초학습지원, 독서지도, 도서대여, 방문미술지도, 인지장애 및 언어치료 서비스 등
정서/행동	종합심리검사, 심리치료, 정신건강 서비스, 체험활동, 특기적성 및 진로지도,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, 멘토링프로그램,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
부모/가족	부모교육, 임신부 산전·산후검진, 양육상담 등 가족상담 치료·프로그램 등
가족돌봄 특화	아픈부모 의료·돌봄 서비스 연계, 가족돌봄 특별 지원 등

- (사례관리 대상) 0~12세 취약계층(기초수급·차상위, 한부모) 아동 및 그 가족

* (지원아동 수) ^(21년) 66,310명, ^(22년) 61,685명, ^(23년) 57,501명 ^(24년) 53,585명

※ '26.3월 「위기아동청년법」 시행에 따라 '가족돌봄아동(6~12세)' 추가

- (추진체계) 보건복지부(총괄), 아동권리보장원(지원), 시군구(수행)

- (사업예산) '26년 56,241백만 원(지자체 보조: 서울 50%, 지방 80%)

- (법적근거)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 및 「같은법시행령」 제37조

- **2026년 주요 정책개선 사항**

- (가족돌봄아동) 시군구별 전담인력 1명 이상 지정

* 국정과제 87-4 '취약·위기 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지원강화'에 해당

□ 개요

- (역할) 청소년안전망* 내 필수 연계기관으로 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지원기관

*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·보호·의료·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)

- (근거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·제29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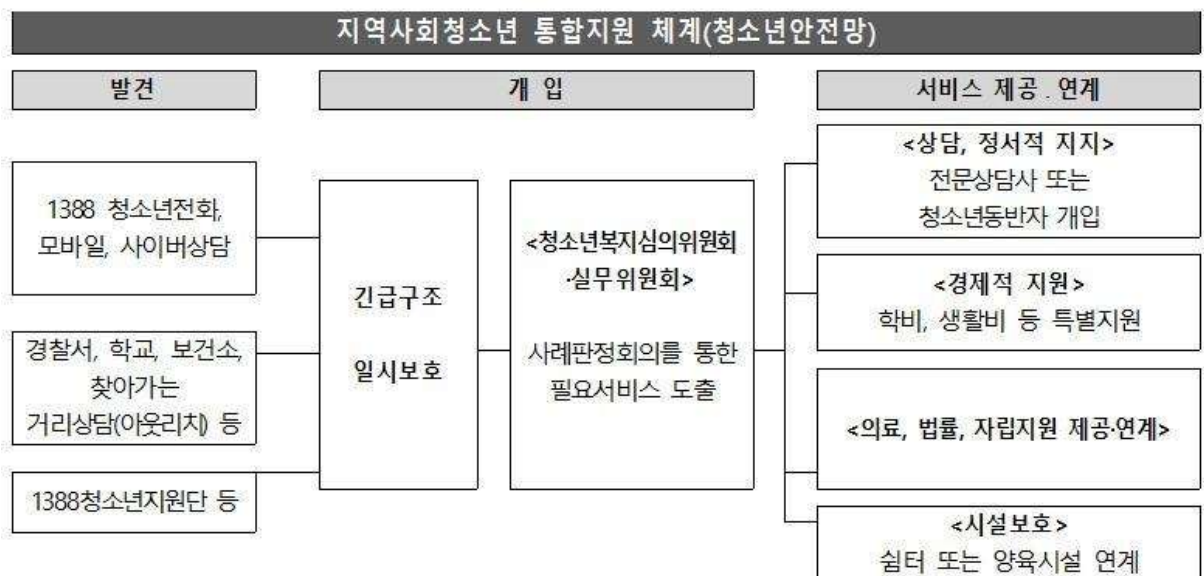
* (제9조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(제29조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(설치) 지방자치단체 별(시·도, 시·군·구)로 설치·운영

(‘26년 기준, 단위 : 개소)

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240	26	16	10	11	6	3	6	1	33	14	13	16	15	23	22	22	3

- (운영 체계) 청소년안전망 내 구조-개입-서비스제공 및 연계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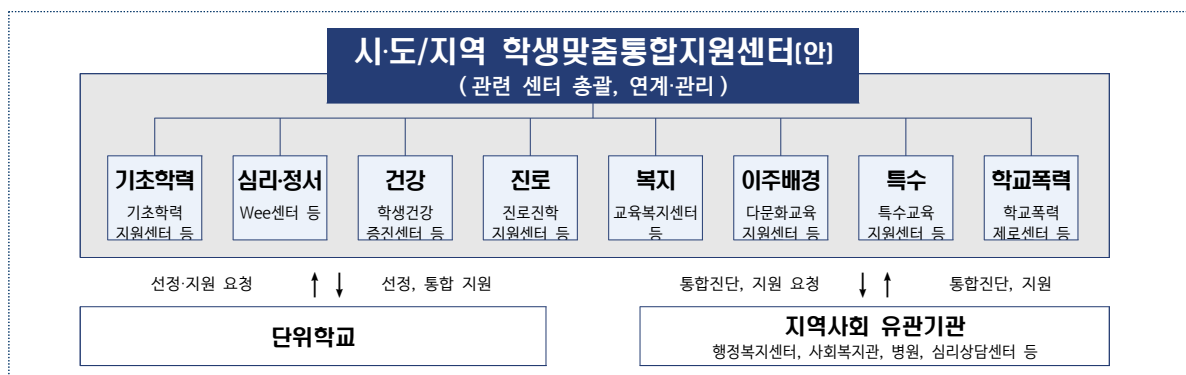


□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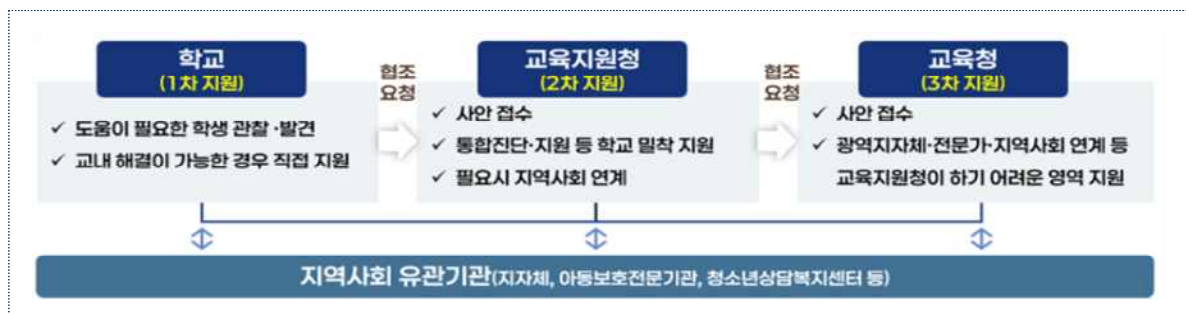
-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학교 - 교육(지원)청 - 지역사회가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」 시행('26.3.~)
※ ('23~'25) 선도학교 436교, 시범교육(지원)청 85청 → ('26) 모든 초·중·고등학교

□ 주요 내용

- (개념)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*를 파악하고, 학생의 전인적 성장,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(법제2조)
* 기초학력 부족, 경제적·심리적·정서적 어려움, 학교폭력, 경계선 지능, 아동학대 등
- (추진체계)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, 시·도교육청별 시·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(17개),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(176개) 등



- (절차) 1차 학교가 지원대상 학생 선정·지원, 2~3차 학교 노력만으로 어려운 경우 교육(지원)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지역사회 연계 지원
- 교육(지원)청은 일반 지자체, 복지관, 병원, 경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



※ 시·도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1 개요

-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·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

*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·출산 지원, 태어난 아동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

2 주요 사업내용

- ① (상담)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·출산·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·운영
*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(17개소) 설치, 통합 상담전화(1308) 개통,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
- ② (보호출산)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, 비용 지원 등 실시
- ③ (아동보호)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, 출생등록 및 보호 조치(입양, 시설보호 등)의 절차 마련
- ④ (기록관리) 상담·출생 기록 작성·보관, 출생증서 공개 절차·요건 등

<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>

